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27년 방범용 CCTV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평택시청
○ 제조사·공급사 :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 대상 품목 : 스토리지(HITACHI G350)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방범용 CCTV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6,552,700원(부가세포함, 12개월 기준)에 낙찰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시, 협약금액은 일할 계산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16일

발주기관명 평택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HS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27년 방범용 CCTV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평택시청
○ 제조사·공급사 : ㈜다누시스
○ 대상 품목 : 안전귀가 서비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방범용 CCTV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755,600원(부가세포함, 12개월 기준)에 낙찰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시, 협약금액은 일할 계산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16일

발주기관명 평택시청 (인)

평택시장인

제조사·공급사명 ㈜다누시스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27년 방범용 CCTV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평택시청
○ 제조사·공급사 : ㈜도시엔컴
○ 대상 품목 : 스토리지(V5000, V7000)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방범용 CCTV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52,457,000원(부가세포함, 12개월 기준)에 낙찰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시, 협약금액은 일할 계산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16일

발주기관명 평택시청 (인)

제조사 . 공급사명 ㈜도시엔컴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27년 방범용 CCTV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평택시청
○ 제조사·공급사 : ㈜마크애니
○ 대상 품목 : 자산관리 솔루션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방범용 CCTV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2,389,200원(부가세포함, 12개월 기준)에 낙찰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시, 협약금액은 일할계산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16 일

발주기관명 평택시청 (인)

평택시장인

제조사·공급사명 ㈜마크애니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27년 방범용 CCTV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평택시청
○ 제조사·공급사 : ㈜세오
○ 대상 품목 : 스토리지(G400, G350)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방범용 CCTV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5,018,000원(부가세포함, 12개월 기준)에 낙찰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시, 협약금액은 일할 계산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16일

발주기관명 평택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세오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27년 방범용 CCTV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평택시청
○ 제조사·공급사 : (사)스마트도시협회
○ 대상 품목 :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방범용 CCTV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6,600,000원(부가세포함, 12개월 기준)에 낙찰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시, 협약금액은 일할 계산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16 일

발주기관명 평택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사)스마트도시협회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27년 방범용 CCTV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평택시청
○ 제조사·공급사 : ㈜에이치씨인포
○ 대상 품목 : 네트워크 장비(OS9907, OS6900 등) 1식, 보안장비(방화벽, VPN) 1식, IP 관리솔루션 1식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방범용 CCTV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64,050,700원(부가세포함, 12개월 기준)에 낙찰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시, 협약금액은 일할 계산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16 일

발주기관명 평택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에이치씨인포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27년 방범용 CCTV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평택시청
○ 제조사·공급사 : 이노뎁㈜
○ 대상 품목 : 통합관제 및 저장분배 솔루션(방화벽, 웹방화벽, VPN 포함), 지능형 관제시스템 및 솔루션(서버, 그래픽카드 포함), 통합플랫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방범용 CCTV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253,573,400원(부가세포함, 12개월 기준)에 낙찰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시, 협약금액은 일할 계산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16일

발주기관명 평택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이노뎁㈜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27년 방범용 CCTV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평택시청
○ 제조사·공급사 : ㈜탑인테크
○ 대상 품목 : 서버(Dell EMC), 가상화서버 및 소프트웨어, 스토리지(EMC, Dell EMC), SAN 스위치(BRC6505, BRC6510, G620)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방범용 CCTV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253,374,700원(부가세포함, 12개월 기준)에 낙찰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시, 협약금액은 일할 계산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16 일

발주기관명 평택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탑인테크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27년 방범용 CCTV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합유지보수 용역
○ 발주기관 : 평택시청
○ 제조사·공급사 : ㈜피씨엔
○ 대상 품목 :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방범용 CCTV 및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3,266,000원(부가세포함, 12개월 기준)에 낙찰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시, 협약금액은 일할 계산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16 일

발주기관명 평택시청 (인)

제조사·공급사명 ㈜피씨엔 (인)